

<별첨> “공개경쟁채용 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19 - 10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에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I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 형태	구분	채용 구분	채용 직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임용 예정일
정규직 (일반직)	공개경쟁 (일반)	경력	4급	농업정책자금관리	1명	‘19. 4. 1.
				농업재해보험관리	1명	‘19. 4. 1.
		신입	5급	농업정책자금관리	2명	‘19. 4. 1.
					2명	‘19. 7. 1.
				전산	1명	‘19. 4. 1.
				행정사무	1명	‘19. 4. 1.

* 보수수준 : 우리 원 내규에 따름(보수준칙 등 우리원 내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alio.go.kr) 에서 확인 가능)

** 경력직은 경력 인정범위 내에서 호봉 책정

*** 신입직은 5급 1호봉을 적용하되 군 경력 반영하여 호봉 조정

1. 모집 자격요건

가. 공통(신입, 경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농업정책자금관리(신입) 분야 최종 합격자의 경우 최종 성적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19. 4. 1. 또는 '19. 7. 1.에 임용예정이며, 해당분야 지원자는 지원 시 임용일 선택 불가

< 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나. 농업정책자금관리(경력)

-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농업·수산업·산림·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정책자금업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정책자금 검사(감사) 제도 기획 및 운영 업무, 신용보증 및 대손보전 업무 등

- ※ 경력직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상 기관명 및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최종 근무부서가 아닌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추가 증빙 가능)

다.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 국내 보험계리사 합격 후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보험관련 연구기관, 보험계리법인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보험업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보험제도 연구, 보험사업관리, 보험통계관리, 언더라이팅, 보험상품개발, 보험수리 등

- ※ 경력직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상 기관명 및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최종 근무부서가 아닌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추가 증빙 가능)

2. 우대 사항

가. 공통(신입, 경력)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가산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하되,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직무능력 점수에 한하여 가산(‘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직업성격 분야(인성)」에는 가산 없음)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만점의 5% 가산

*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적용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하며,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 (2019.2.14.)**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전산(신입)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개인정보보호·보안·정보시스템자원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

다. 행정사무(신입)

○ 공공기관 세무·결산·회계·경영실적평가 업무 유경험자 우대

III

담당 업무

[농업정책자금관리]

-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검사계획 수립·조정
- 검사제도 및 운영방안, 방법 등 연구
-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
- 부당사용 사전예방활동
- 기타 행정업무 등

[농업재해보험관리]

- 농업재해보험의 제도 및 상품개선 업무
- 재해보험관련 신규품목 도입 및 신상품 연구
- 해외 보험상품 및 제도 조사업무
- 기타 행정업무 등

[전산]

- 정보시스템 개발·관리·운영
-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정보화사업 계획수립·추진·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행정사무]

- 보조금 관리 등 기관 회계 정산·결산 업무
- 회계감사·경영평가 대응 업무
- 근태관리·급여·복리후생·4대보험 업무
- 기타 행정업무 등

IV

채 용 절 차

1. 개 요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교육,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나. 원서 접수기간

- 2019.2.15.(금) 18:00 ~ 3.4.(월) 13:00, 17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3.11.(월)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

○ 2019.3.13.(수) 오후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2019.3.15.(금) 14: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4. 면접전형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나. 면접전형 시행일

○ 2019.3.18.(월)~2019.3.20.(수)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3.22.(금)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5. 채용관련 문의사항

○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V

증빙서류 제출

1.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해당자	① 직무관련 자격증명원(자격증) - 기타 자격의 경우 추후 최종합격 시 증빙서류 제출 ②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 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필히 인사기록카드 등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제출(미제출시 인정 불가) - 증명서 상 기간과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재직기간이 불일치 할 경우(1일 이상), 허위 작성으로 간주되어 해당 경력인정이 어려우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③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청) ④ 장애인 증명서(시·군·동)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시·군·동 / 지원자 명의로 발급) ⑥ 농어업인자녀 증명서(아래 서류 중 택일)와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원부(시·군·구)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립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시·군)

주1) ④번 ~ ⑥번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자는 ④번 ~ ⑥번 중 1개의 증명서만 제출

주2) ③번 ~ ⑥번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자는 ③번의 증명서만 제출

주3)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되,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본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의 경우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번호 뒤 7자리에 대해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제출할 것

2.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상기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및 추가서류 원본을 제출
 - 제출기간: 2019.3.22.(금)~3.29.(목)
 - 제출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01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채용 담당자

VI 응시자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원 채용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등 우리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자녀) 등의 자격은 **공고일 전일(2019.2.14.)**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첨부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경우 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받기 원하시는 경우, 발송 비용을 응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기간: 2019.4.1.~2019.4.15.

* 청구기간이 지난 원본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처 : ehlee@apfs.kr (문의 : 02-3775-6704, 6757)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직원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 및 기 채용공고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통해 재공고 합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첨부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